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성연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429호

다. 제출일자 : 2023. 1. 12.

라. 회부일자 : 2023. 2. 9.

2. 제안사유

-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상인뿐만 아니라 보행권을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정에서부터 해제 및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후단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14. ~ 2023. 2. 19.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동의(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 또는 변경 시에도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또는 변경 시에도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

1) 교통정책과-2479 (2023.02.14.)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규모 변경 시 시장이 이를 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시와 마찬가지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변경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중교통전용지구”²⁾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³⁾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2012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550m 길이의 연세로⁴⁾ 일대를 첫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음

2) 대중교통전용지구

-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제도를 말한다. 도심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및 도심교통환경 개선 등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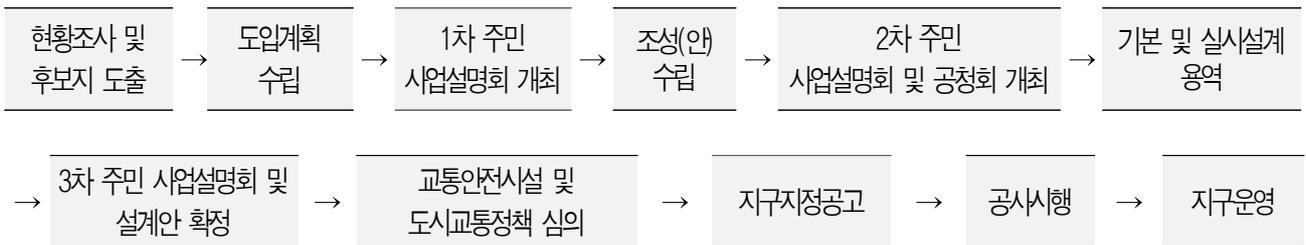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4) 연세로에서는 2014년부터 자전거와 시내버스, 구급차 등만 통행이 가능하며 일반 승용차는 24시간 진입이 금지될 뿐 만 아니라 택시 또한 심야시간대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 당시 10km/h 내외의 교통정체, 보행 여건 열악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친 주민 사업설명회 등의 지정 절차를 거쳐 최초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4년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음

※참고: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당시 주요 절차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시민 만족도, 상권 매출, 보행자 이용량 결과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으나

5) 서울시 제출자료-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요청자료(‘23.2.)

- 시민 만족도 증가
 - 보행자 만족도는 80%대 수준 유지, 상인 만족도 다소 반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행자	18.3%	78.5%	86.0%	84.2%
상 인	34.0%	41.0%	22.3%	41.4%

- 신촌상권 매출 증가
 - 초창기 신촌상권 활성화에 기여
 - ▶ 분기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 14.2% 증가 : 64,163천원(‘14) → 73,304천원(‘18)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촌지역 점포당 평균 매출액(천원)	64,163	66,446	66,714	73,250	73,304

- 보행자 통행 증가
 - 보도폭 확장, 보행장애물 철거, 광장·쉼터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량 증가
 - ▶ 시간당 보행량 37.3% 증가 : 4,200명(‘13.4) → 5,786명(‘16.5)

구 분	13.4월	14.2월	14.3월	14.4월	14.5월	16.4월	16.5월
시간당 보행량(명)	4,200	4,293	4,973	4,989	5,298	5,761	5,786

최근에는 연세로가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신촌 상권 부활, 차량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일시 정지를 결정⁶⁾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해제가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 및 해당 자치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및 변경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⁷⁾에도 개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당위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충돌 및 대표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제 및 변경 시 충분한 논의 및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의 대립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 안내: 교통정책과-288('23.1.5.)

7)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지침(2011.12.) p.10

-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한 후 지구지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시도지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구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